

대구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5나207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7. 5. 12 선고 2015나20712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115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 항소인 1. F

2. G

3. H

변론 종결 2017. 4. 5.

판결 선고 2017. 5. 1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 2. 5. 선고 2013가합1157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영주시 I 도로 618㎡ 및 영주시 J 도로 116㎡ 중, 피고 F은 각 3/7 지분, 피고 G, H는 각 2/7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2. 11. 1. 접수 제 237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각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07. 5. 3. 접수 제 8613호로 마친 망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들에게 소외 M과 연대하여, 피고 F은 각 10,262,571원, 피고 G, H는 각 6,841,71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2014.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각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부분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8면의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3가합55(본소), 2013가합833(반소)]은 2015. 1. 8. 'M이 먼저 망 L에게 소송 제기를 제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1차 관련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고, M이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하여 망 L를 대리하여 이 사건 1차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 대가로서 망 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1차 관련 판결금을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 또한 위 변호사법 규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M의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M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나20248(본소), 2015나20255(반소)]도 2015. 11. 12. 위 1심판결과 이유로 M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M이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위 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 17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20호증의 2, 갑 제22호증의 1 내지 26호증, 갑 제28 내지 32호증, 갑 제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행의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갑 제34, 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M은 형사재판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1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4. 선고 2015고정19 판결(벌금 500만원),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노3804 판결(M의 항소 기각), 상고심: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2606 판결(M의 상고 기각)].

피고인 M은 2006. 9. 11. 사실혼 관계인 K 명의로 L 소유인 영주시 I도로 618m², J 도로 116m²(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L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07. 5. 3. K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 토지는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이라는 소유권의 본래적 내용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영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으로써 금전적인 이득을 취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07. 8. 23. 안동시 강남로 304 소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위 영주시 I 도로 618m², J 도로 116m²에 관하여 K 명의로 영주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대구지법 안동지원 2007가단6161호)을 제기하여 2008. 1. 23.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2008. 2. 20. 영주시로부터 부당이득금 및 지연이자로 13,120,070원을 교부받고, 2007. 12. 3.부터 2012. 9. 3.까지 매월 1,842,000원을 부당이득금(토지사용료)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후 소송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당심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진원두

판사성기준